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입주기업 입주협약 연장 심사표

□ 개요

ㅇ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입주기업 11개사 중 입주협약 연장 희망 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부실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 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시허브, 바이오허브)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기타 참여제한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 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ㅇ 선정기준

-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합계 총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 연장(심 사결과 비공개)
-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협약 연장에서 제외하며 공고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진행

ㅇ 평가항목

연 번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전년도 기업활동	매출액	* 전년도 대비 평가년도 매출 증가여부 - 평가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x 100 140%이상 120%이상 100%이상 80%이상 80%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5
		신규고용	* 최초 입주년도 고용인원 증가여부 2명 이상 1명 0명 5점 4점 3점	5
		투자유치	* 최초 입주년도 투자유치 여부 2회 이상 1회 이상 없음 5점 4점 3점	5
		입주공간 이용률	* 입주공간 출입기록 산정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50 40 30 20 10	50
2	당해연도 계획	적합성	* 상주인원 *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A B C D 10~9 8~7 6~5 4~0	10
		기업역량	* 실현능력 및 입주 연장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A B C D 10~9 8~7 6~5 4~0	10
		기대효과	* 성장 가능성 A B C D 15~14 13~12 11~10 9~0	15
평가합산점수				100